

# 윤리실천지침

코웨이 주식회사

### coway

## 윤리실천지침

#### 제 1 장 총칙

#### 1. 목적

본 지침은 윤리규정 3.3.에 의거하여 금품, 향응, 접대, 편의제공, 기타 경제적 이익의 수수와 직무/직위를 통한 부당행위 등의 규제 및 이와 관련된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정의

- ①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a. 금품이라 함은 금전, 유가증권, 물품, 부동산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.
  - b. 향응·접대라 함은 식사, 주류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, 향락, 관광 등의 수혜를 말한다.
  - c. 편의제공이라 함은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·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.
  - d. 기타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채무면제, 취업제공, 이권 부여 등 사람의 수요·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·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.
- ②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 함은 퇴직 후 고용, 취업 등 약속 또는 알선, 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을 말한다.
- ③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.
-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은 사내외의 협력사(동반자)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, 법인, 기타 단체를 말한다.
- ⑤ 공직자등이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.
  - a. 「국가공무원법」또는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  - b. 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
  - c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

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

- d.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- ⑥ 공무수행사인이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1항 각호에 서 열거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.
  - a.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  - b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  - c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  - d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- ⑦ 부정청탁이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1항에서 열거한 공 공기관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, 공직 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요구하거나, 공직자등의 권 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 등을 하는 재화·용역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벗어나 매각·사용 등을 할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 를 말한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- a. 법령·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
  - b.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  - c.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하거나 그 진행상황·조치 결과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
  - d.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·증명을 요구하는 경우
  - e. 직무에 관한 법령·제도·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
  - f.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

만약,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요구하는 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윤리경영실에 문의하여야 한다.

#### 3. 해석기준

본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부윤리실천지침, 취업규칙, 인사규정, 인사위원회 규정을 고려한 윤리경영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
#### 4.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

본 윤리실천지침은 윤리규정 이외의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.

#### 제 2 장 금품 관련 기준

#### 1. 기본 원칙

- ① 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가족,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.
- ③ 임직원 개인 및 해당 부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직원 상호간에 승진, 영전, 취임, 명절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미풍양속을 고려하여 아래의 범주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.
  - a. 임직원 1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상급자에게 선물을 할 때, 그 물품 가액은 단독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 1회당 3만원, 공동으로 하는 선물의 경우 1회당 5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, 임직원 1인이 수령하는 선물의 가액은 연간 총액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
  - b.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자 또는 단위조직의 장이 해당 팀원들에게 선물을 할 경우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경조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(결혼축의금, 부의금에 한함)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
  - c. 명절 등 상사 댁을 방문할 시에는 방문할 상사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방문한다.
- ④ 동반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하게 선물을 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 상품을 활용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 회사 상품이 아닌 경우, (사전 혹은 사후)선물을 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.
- ⑤ 경조는 본인, 배우자나 그 직계 존·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동반자 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.
- ⑥ 부하직원이 본인 임의로 동반자 등에 고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.
- ⑦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,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.
- ⑧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부서장 보고 후 반환하며 부서장은 반환사실에 대해 윤리경영실 에 신고해야 한다.

#### 2. 신고대상

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현금·상품권·승차권·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신고절차

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 야 할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4. 선물 수수시 처리방법

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한후, 전달받은 금품과 함께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하며, 윤리경영실은 금품을 취합하여 선물제공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.(최대 10일 이내)

#### 제 3 장 향응·접대 관련 기준

#### 1. 기본 원칙

- ① 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·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,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. 단,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인당 1만원 미만, 총액 10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 거래선과 외부에서의 만남과 식사는 배제하고, 만남 시 사내에서 면담함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업무진행상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만남과 식사를 가질 경우 필히 3.1.1.의 기본원칙을 따른다.
- ③ 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성격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·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.
- ④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보며, 금액은 3.1.1.의 기본원칙을 따른다.

#### 2. 신고대상

- ①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, 음주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, 향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룸살롱, 단란주점, 골프장, 카지노, 증기탕, 안마시술소 등 호화사치성 및 퇴폐업소에서의 향응 수수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신고절차

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·접대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 4 장 자본적 수익 관련 기준

#### 1. 기본 원칙

- ①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의 코웨이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임직원은 그정보를 공개, 이용, 거래 등 업무와 무관하게 어떠한 취급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직원은 자본적 수익과 관련한 공시정보 관련 규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3.1.1.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.

#### 2. 신고절차

위 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윤리경영 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처리 방법

- ① 윤리경영실은 제보 내용,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달하고, 인사위원회는 사내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.
- ② 윤리경영실은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절차에 따라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다.

#### 제 5 장 편의 제공 및 직무·직위를 통한 부당 행위 기준

#### 1. 기본 원칙

- ① 편의 제공 수수
  - a. 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 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안되며,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. 단,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교육,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교육생에게 동일한 시설, 식사 및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b.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,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- c.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.
- d.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e.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f.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(주관부서장)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부 서장은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야 한다.

#### ② 부채 상환 및 보증의 수수

- a.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,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은 금전 수수로 본다.
- b.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영업권,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.
- c.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.

#### ③ 동산·부동산에 대한 차용

- a. 업무와 관련한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. 단, 국가 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.
- b. 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c. 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·부동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.
- d.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.

#### ④ 미래에 대한 보장

- a. 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, 취업알선 및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.
- b. 가족,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.

#### 2. 신고대상

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의 편의 제공 수수, 부채 상환 및 보증의 수수, 동산·부동산에 대한 차용,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신고절차

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편의 제공 수수, 부채 상환 및 보증의 수수, 동산·부동산에 대한 차용,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4. 편의 제공 및 부당 행위 수수에 대한 처리 방법

업무와 관련하여 동반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편의 제공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수수한 경우 보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각 수수내용과 금액에 따라 윤리경영실에서 취합하여 제공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(최대 10일이내).

#### 제6장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

#### 1. 부정청탁금지

- ①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은, 그에 수반하여 금품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.
- ④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열거한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청탁의 상대방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금지된다.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윤리경영실에 문의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을 업무상 접촉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윤리경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. 불가피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사후보고를 한다.

#### 2. 금품등 제공의 금지

- ① (1)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및 (2)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공공기관등의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제공은 절대 금지된다.
- ② 공무수행사인에게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또는 매 공공기관등의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제공은 금지된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.

④ 동일한 공직자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여러 임직원이 금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윤리경 영실의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3. 사교·의례 목적의 금품등 제공

-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,
- ②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,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음식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액이 5만원 이하이여야 하고, 각각의 가액도
- ④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⑤ 경조사비와 화환, 선물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액이 1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, 각각의 가액도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⑥ 선물은 음식과,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현금이나 골프등 의 향응·접대는 제외된다.
- ⑦ 경조사는 공직자등 본인 및 그 직계비속의 결혼, 본인과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의 장례를 의미하며, 그밖에 생일, 돌, 회갑, 집들이, 승진, 전보, 퇴직,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⑧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월 3회 이상 음식물, 경조사비, 선물 등을 제공하면 아니된다.

#### 4.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 제공

- ①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의 제공은 허용된다.
- ② 제1항의 권원은 그 체결절차가 관련 법령 또는 당사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적법하여야 하며, 제공되는 금품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수령이 전제되어야 한다.
- ③ 증여, 무이자 소비대차, 대가의 불균형이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은 금지된다.
- ④ 공직자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윤리경영실의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5.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금품등 제공

- ①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② 공식적인 행사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, 참석자가 소수로 특정되지 않은 행사만을 의미한다.
- ③ 행사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준의 교통, 숙박, 음식물 외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선물 등다른 금품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.
- ④ 공식적인 행사 개최하려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6.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 제공

- 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의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은 허용된다.
- ②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는 회사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하며,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.
- ③ 경연이나 추첨의 경우 경연이나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④ 기념품 및 홍보용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7.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

① 공직자등을 초청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를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구분		상한액 (1시간 또는 1기고)	비고
공무원	장관급 이상	50만원	■ 1시간 초과 강연시에도 상한액의
	차관급	40만원	- 150% 초과 금지
	 4급 이상	30만원	■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
	-10		관계없이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 
	5급 이하	20만원	함함 (단,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
			비, 식비는 제외)
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	기관장	40만원	
	임원	30만원	상동
	그 외 직원	20만원	
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		100만원	■ 상한액 제한 없음
법인의 임직원,			■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
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			관계없이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
			함함 (단,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

비, 식비는 제외)	
■ 단,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	체(공공
기관) 임직원에도 중복적으로 형	해당하는
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	난단체(공
공기관) 임직원의 상한액 기준	을 적용함

② 강연을 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는 소속기관별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.

#### 8. 신고절차

- ①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본 윤리실천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제공행위를 알고 있는 자는 안 날로부터 3일 내에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적 취급도 금지되며, 신고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.
- ③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되다.

#### 9. 처리 방법

- ① 윤리경영실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본 윤리실천지침 위반사 항 신고가 들어온 경우 또는 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관련자 인터뷰, 서류 검사 등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② 윤리경영실은 조사 결과 법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, 감사원,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신고와 동시에 윤리경영실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.

#### 제 7 장 자산 및 정보 관련 기준

#### 1. 기본 원칙

- ① 회사 유형자산(시설, 제품 등 각종 유형물)의 부당사용, 무단반출, 부당매각, 관리소홀 분실, 손괴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 무형자산(기술, 정보 등 각종 무형물)은 권한에 따라 접근 및 이용하며, 이를 부당이용, 무단반출, 부당처리, 불법유통 등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 지 않는다.

③ 고객의 자산(고객 개인정보, 거래정보 등 각종 정보)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관계법령은 물론 윤리규범의 위반행위와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하고 부정하게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.

#### 2. 신고절차

사업장 내에서 6.1.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처리 방법

- ① 윤리경영실은 제보 내용,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인사위원회, 관련 지원본부에 전달하고, 인사위원회 및 관련 지원본부는 사내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.
- ② 윤리경영실은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절차에 따라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다.

#### 제 8 장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기준

#### 1. 기본 원칙

- ①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음란한 농담이나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음란물(사진, 그림, 서적 등)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⑤ 익명으로 신고된 성희롱 행위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.
- ⑥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,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, 가해자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.

#### 2. 신고절차

사업장 내에서 7.1.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당하였거나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인재개발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3. 성희롱 처리 방법

- ① 인재개발팀은 제보 내용,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달하고, 인사위원회는 사내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.
- ② 인재개발팀은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절차에 따라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#### 1. 시행시기

- ① 본 윤리규범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윤리규범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③ 본 윤리규범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④ 본 윤리규범은 201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⑤ 본 윤리규범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## 윤리 신고 사례

#### 이런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- · 이해관계자가 코웨이 임직원에게 식사,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
- ㆍ이해관계자가 코웨이 임직원의 경조사에 경조금 또는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
- · 이해관계자가 코웨이 임직원에게 교육, 단합대회, 문화행사 등의 명분으로 강사료, 식대, 공연 티켓 등을 제공하는 경우
- · 이해관계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코웨이 임직원과 동행하면서 차량, 숙박비, 관광가이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
- · 이해관계자가 코웨이 임직원에게 경품제공, 특별할인 등의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

#### 생각해 봅시다.

- · 만약 코웨이 임직원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자가 지금의 금품, 향응, 편의를 제공하였을 것인가?
- ·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?
- ·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과 기준에 어긋남이 없는가?
- ·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내용을 상사나 동료들에게 자신있게 공개할 수 있는가?